##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숭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010

발의연월일 : 2022. 12. 20.

발 의 자:최승재·서병수·허은아

하태경 • 윤두현 • 윤주경

이명수・최춘식・조정훈

노용호 · 김 웅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불법 채권추심 등 다양한 수법의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 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소비 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금융교육은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 향상을 주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불법사금융 예방교육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홍보 및 예산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외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도 금융교육업무 위탁기관으로 명 시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을 통하여 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4항 신설 등).

#### 법률 제 호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금융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금융교육) ① ~ ③ (생	제30조(금융교육) ① ~ ③ (현행
략)	과 같음)
<u> &lt;신 설&gt;</u>	④ 금융위원회는 유사수신행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각종 금
	<u>융관련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u>
	을 위한 교육 시책을 수립ㆍ시
	행하여야 한다.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	<u>⑥</u> <u>제</u>
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교	<u>5항</u>
육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금융감독</u>	
원(「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	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장(이하
(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u>다)</u> 또는 금융교육 관련 기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
•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
	<u>흥원의 장</u>